

문서번호	급수운영과-3613
결재일자	2015.3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지방시설사무관대우	급수운영과장		결재
송시훈	이승완	03/04 김수영		
협 조				

교육 일지(초과근무 관리 강화)

교육 일시	2015. 3. 2(월) 17:00 ~ 17:30
교육 장소	급수운영과 사무실
교 관	급수운영과장
교육 대상	총원 22명, 교육참가인원 21명(공가 1명 : 숙직 후 휴무)
교육 제목	초과근무 관리 강화
교육 내용	<p>□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</p> <p>초과근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</p> <p>○ 중점관리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음주 및 부서회식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체크하는 행위 금지 - 업무종료로 인한 귀가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체크하는 행위 금지 -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체크하는 행위 금지 ※ 사적용무: 학원수강(직장 외국어 포함), 운동(청사 체력단련실 이용) 등 - 초과근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 적발 : ①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②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③ 승진,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• 2회 적발 : ①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②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③ 승진,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• 3회 적발 : ①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②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③ 승진,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

-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
 - 초과근무명령 금지,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
 -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
 - 3회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조치
-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 지급 등급결정시 참고
-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,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,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

○ 교육 사진

